

2019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 징수 공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5896호)」제4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 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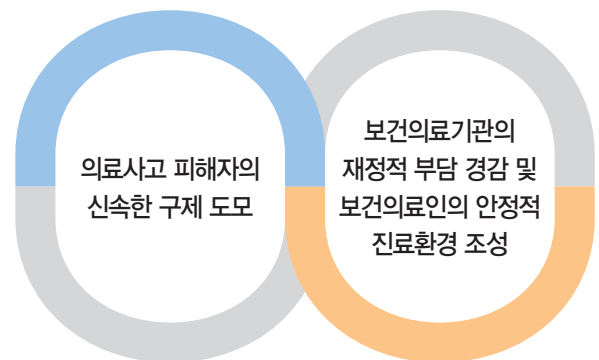
2019. 9. 1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의 조정 성립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



2019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 및 납부 대상자

■ 적립 목표액 : 114,896,480원

■ 납부 대상자 : '18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3,858명

※ 단, '19. 1. 1. 이전 폐업한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2019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부담액

- 상급종합 : 6,336,700원 ● 종합병원 : 1,069,260원 ● 병 원 : 111,030원
- 의 원 : 39,650원 ● 치과병원 : 111,030원 ● 치과의원 : 39,650원
- 한방병원 : 74,020원 ● 한 의 원 : 26,430원 ● 요양병원 : 72,170원
- 보건의료원 : 111,030원

■ 최저 부담액(1만원) : 약국,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개별 의료기관의 종별 기준금액을 정액으로 부담

2019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징수

부과방법

■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공고 (2019. 9. 19.)

- '19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시기 등 공고

■ 대불비용 개별 부담액 안내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납부시기 등에 관한 개별 안내문 발송
-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가능

개별기관 대불비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접속
- ② 「손해배상금 대불」 (상단) 선택 ③ 「개별 부담금 조회」 (좌측) 선택
- ④ 요양기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납부방법 및 시기

■ 요양급여비용 공제 : '19.10.19. ~ '19.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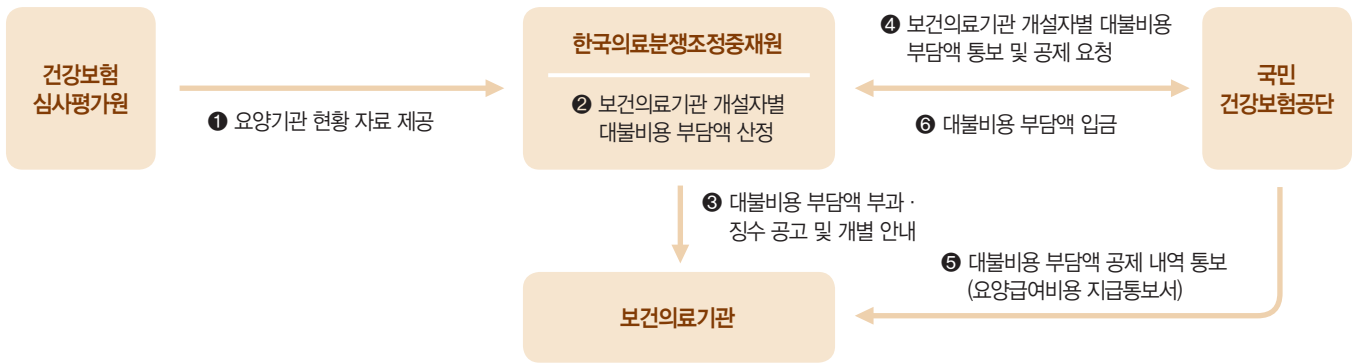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법 제47조제4항)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선별하여 가상계좌 납부 안내 예정

■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 대불비용 부담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체계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제4항

- 제2항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주체
- 제4항 : 대불비용의 납부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

- 제1항 :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목표액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 제2항 :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징수액 수립
- 제3항 :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시기 공고

재원의 관리 · 운용

- 의료중재원의 예산과 별도 관리 · 운용
-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 · 운용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분들이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전국 보건의료기관개설자분들이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일시적 경영 악화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유용한 제도입니다.